



전자금융 거래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향후 개편 과제

글.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01

들어가는 말

디지털금융거래의 법률관계와 전자금융업종을 규율하는 대표적 법률이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이다. 이 법은 컴퓨터, ATM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다. 동시에 이 법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 진입조건과 검사·감독, 안전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업법이라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16년의 시행 기간 중 큰 틀의 변화 없이 낮은 규제 방식과 좁은 적용 범위 등을 지속해 와 디지털금융 시장 변화를 못 따라가는 OLD한 법이 되고 있다. 임시 방편으로 가이드라인과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우회해 오던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 왔다. 윤관석 의원 안(2020년), 김병욱 의원 안(2021년) 등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발의도 추진했으나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의 심의가 중단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머지포인트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지난 9월 14일 공포되었다. 동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개정 범위가 선불업,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국한된 One Point 부분 개정이라 전자금융거래법의 근본 한계를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낮은 규제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은 하루빨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업종설계 및 라이선스, 지급수단, 건전성 및 행위규제, 책임조항, 보안규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첨단 디지털금융시대를 뒷받침해 주는 발판으로 거듭나야 할 당위성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동 법의 근본적 개편 과제들을 법체계 및 정체성 분야, 거래법 분야, 사업법 분야, 보안규제 분야 등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02

최근 개정 동향

국회 심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안

간편결제 등 소액결제시장과 디지털금융 분야의 환경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내걸고 관련 TF를 통해 2020년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 안(2020년), 김병욱 의원 안(2021년) 등 개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형식적 명칭은 일부 개정안이지만 근래 보기 드문 전면 개편안이라 할 수 있다. 동 법안들은 디지털금융 분야의 종합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아 왔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자금융업종 통합 개편, 진입규제(라이선스) 정비, 전자지급수단 역할 정립, 종합지급결제업 신설과 지급계좌 허용, 마이페이먼트 신설, 오픈뱅킹 법제화, 빅테크와 금융플랫폼 규제 강화, 사고배상책임 제도 정비, 금융보안 규제 정비 등 혁신적 규제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의 심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전면 개정안이라 방대하고 수많은 사안에서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쟁점법안이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과 합의 없이는 심의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국회도 내년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규모 해킹사고나 정보 유출, 정전·화재, 머지포인트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안 심의에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다. 디지털금융 관련 법 규제들은 대부분 민생 법안에 해당하지 않아 시급하지 않다는 시각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일부 개정

선불업 범위를 확대하고 행위규제를 강화하며, 소액후불결제업무(Buy Now Pay Later, BNPL)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14일 공포되었다(법률 제19734호, 시행 2024년 9월 15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 또한 개정 법률은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업무(한도 : 월 30만 원)를 선불업자의 경영업무로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개정 법률에 의하면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로부터 '1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던 모바일 쿠폰, 전자상품권류 등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거 포함되었다. 특히 지류식 상품권이라도 전자식으로 변환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율받게 되었다.

2023.9.14. 공포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

선불업 관리감독 강화 및 이용자 보호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

-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 선불업 등록면제 대상 축소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
-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
⇒ 가맹점 축소, 이용조건 변경 시 잔액 전부 환급 내용 약관 반영 등
⇒ 일정 재무건전성 충족시에만 할인발행, 적립금 지급 가능
- 대표가맹점 신설 및 행위규제 강화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

현재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선불업자가 제공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간편결제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 선불업의 경영업무로 금융위원회 승인 제도화
- 소액후불결제업 영위자의 행위규제 신설

전자금융거래법의 한계와 전면 개편의 시급성

전자금융거래법의 긍정적 역할

전자금융거래법은 현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핀테크, 빅테크)의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법률관계,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진입규제, 행위규제, 안전성 기준(금융보안) 등 디지털금융에 대한 기본 법령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금융거래에 대한 뼈대와 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은 특히 전자금융사고 배상책임, 인증(접근매체) 및 해킹 방지대책 등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에 대한 필수 규율사항도 담고 있어 점차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한계

전자금융거래법의 근본적 한계는 너무 OLD 해서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미치지 못하는 낡은 규제체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근본 개정 없이 전산사고 등의 배상책임과 금융보안 관련 일부 규정만 10여 차례 개정되었을 뿐이다. 낡은 규제 방식과 좁은 적용 범위 등 수많은 한계점을 가진 채 첨단 디지털금융을 규율하고 있다. 이는 마치 BTS나 블랙핑크 같은 세계적 K-POP 가수들이 16년 전 의상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 디지털금융 상품과 전자지급수단 등의 융합(컨버전스)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낡은 업종설계에도 과도한 진입규제, △ 전자지급거래(Payment)에 국한된 법률관계, △ 새로운 혁신기술(블록체인, AI,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법률관계를 반영할 수 없고, △ 획일적이고 포지티브한 열거주의 규제, △ 타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미흡 등 많은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

임시방편으로서 가이드라인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시급히 개편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 당국은 입법을 통한 근본적 해결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우회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디지털금융에 대한 입법 공백 및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는 것도 임기대응식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해 관계인의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며 규범적 효력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의 입장에 따라 중요하거나 민감함 내용이 빠질 수도 있어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04

전자금융거래법의 향후 개편 과제

법 정체성과 체계 정합성, 적용 범위 측면

가. 법 명칭의 개정과 정체성 확립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 명칭을 “디지털금융기본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이라는 용어는 국내 시장에서 2000년대 초반~2010년대 사용하던 낡은 용어이다. 최근에는 디지털금융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금융산업, 핀테크 등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책이 부족하고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금융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인센티브)의 내용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성도 높다. 디지털금융산업의 육성과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당국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의무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 타 법률과 체계 정합성 확립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금융에서는 칸막이식 규제보다는 상호 유기적 통합형 입법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금융 법 규제는 규율 목적과 내용별, 업종별로 여러 법률들이 직·간접적, 파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금융거래 기본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의 효력도 미흡해 법 체계 정합성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이미 디지털금융거래에 필요한 뼈대와 틀, 이용자보호 장치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금융의 기본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디지털금융거래 일반원칙, 중요 법률관계, 사고 책임, 이용자 보호조항, 금융보안 및 검사·감독 등 핵심 내용을 담아 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을

명시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나머지 기능적 규제 수요는 기존 개별법에서 디지털금융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특례조항 형태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어음법, 정보통신망법 등 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디지털금융거래 관련 규제들도 장기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법 영역과 사업법 영역이 하나의 법에 반영되어있는 통합법이다. 그동안 사업법 분야만 개정이 일부 이루어지고 거래법 영역에는 근본 변화가 없어 규율사항이 남아지자 거래법을 분리해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금융 분야에 특화된 통합법으로서 디지털금융의 특성에 맞게 일관성 있는 규율을 하려면 통합법 형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 법 적용 범위 확대와 역외 적용 강화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거래(Payment) 중심의 규율 체계로 인해 전체 디지털금융 상품과

법 체계 및 적용범위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과제

<p>법 명칭의 개정과 정체성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법 명칭 → 디지털금융기본법으로 변경 • 디지털금융산업의 육성과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의무(금융위원회)
<p>타 법률과 체계 정합성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법에 있는 전자금융거래 일반원칙, 중요 법률관계, 사고 책임, 이용자 보호조항, 금융보안 및 검사·감독 등 핵심 내용은 타 법률 보다 우선 적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어음법, 정보통신망법(통신과금) 등 타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는 디지털금융거래 관련 규제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이관 • 거래법 영역과 사업법 영역의 통합법 형태 계속 유지
<p>법 적용 범위 확대와 역외 적용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지급거래나 전자금융업자 위주의 규율에서 탈피 • 금융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으로서 지위 확보 •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진입,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역외적용 강화

전자지급수단 등의 융합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 전자금융업 위주의 규율에서 벗어나 금융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으로서 지위를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구글, 애플페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해도 이 법이 이들 업체에 적용 가능한지도 모호해 역외적용의 실효성도 낮다.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차원에서 소비자(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거래법 측면

가. 전자금융거래 요건 및 범위 확대

종전에 유권해석 상 대면 거래로 보던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Paperless)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금융사고 등 배상책임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요건 및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대면&자동화 요건 중 비대면 요건을 삭제하고 자동화 요건도 이용자의 거래지시 과정에 일부 또는 전부에 전자적 장치가 개입되면 전자금융거래로 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이용자 보호 관련 조문들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나. 혁신기술 관련 법률관계 반영

전자금융거래법은 급속히 변화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율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한계와 규제 공백을 노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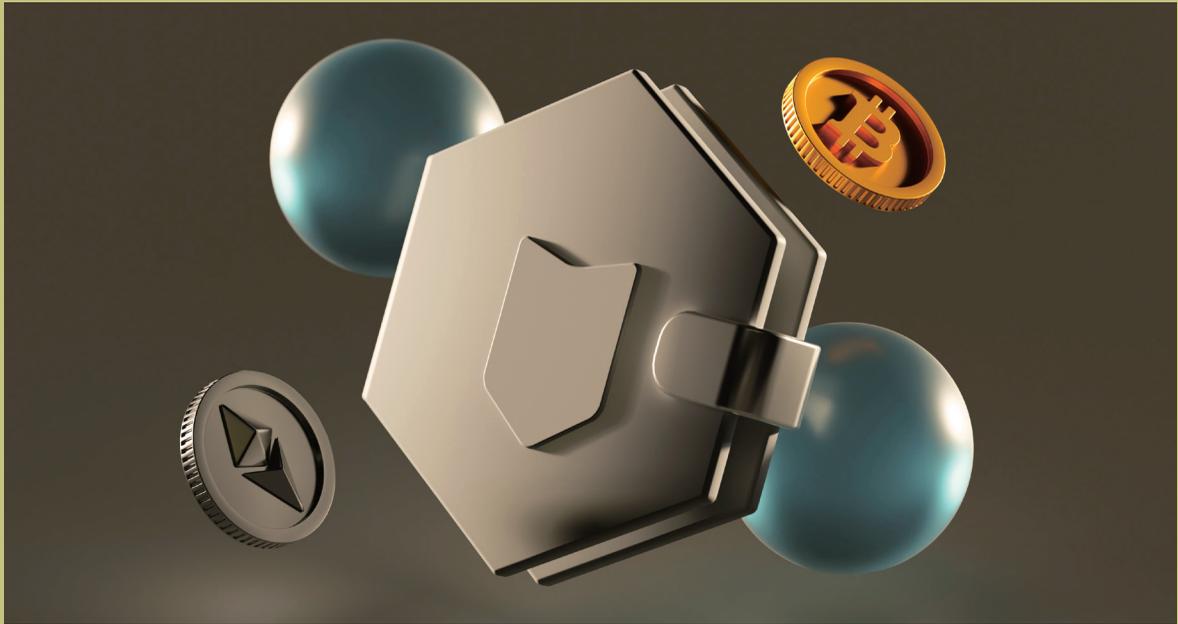
△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예금토큰, 토큰증권 거래 등에 있어 권리추정력이나 제3자 대항력 관련 법적 근거와 기록관리기관 근거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아바타를 통한 거래에서 인증,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도입 △ IoT(사물인터넷), 금융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서비스에 대한 통제나 행위규제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위규제 등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해 나가는 검토가 무엇보다 시급해지고 있다. 특히 AI, 빅데이터, 온라인플랫폼, 블록체인기술(분산원장) 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규율 체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정합성 있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다. 전자지급수단의 설계와 역할 재검토

최근에는 전자지급수단의 역할과 기능이 당초 입법 시 설계한 내용(결제와 송금의 엄격 구분)과 달라져 업종 설계 기준도 모호해지고 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전자지급수단도 발행 주체별로 법률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책임관계도 서로 다르며 등 법체계 정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일원화하거나 법률 간 책임체계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해 송금과 결제, 그리고 후불결제 기능까지 가능한 융합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송금과 결제에 있어서 추심이체 방식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선불형 지급수단의 국제적 규율방식에 따라 유사 기능인 전자화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일원화함이 바람직하다.

현재 가상자산 중에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전해서 결제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높아지고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차원의 규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해킹, 정보유출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고 선불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규제차익 문제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일본 자금결제법이나 EU의 Mica규정 등을 참고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하고 라이선스 및 진입규제, 금융보안 규제 적용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2023.6.3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정무위원회에서도 부대의견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한 바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BNPL)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도 시급하다. 신용공여 기능에만 주목해 신용카드업 규제 적용 등 과도한 규제 적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급 못 받는 거래이력 부족자들(Thin Filer)에게 일시 소액의 선불충전금 형태의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결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안신용평가 모형 개발을 통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 성격 등 혁신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 사고 배상책임 및 분쟁조정제도 정비

소비자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현행 전자금융사고 배상책임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사고요건, 입증책임주체, 면책사유, 이용자 협력의무, 책임이행조치(보험 등) 전반에 걸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감독원이 2023.10 피싱, 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국내 은행들과 체결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의 배상책임 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본다. 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선보상 후조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신속하게 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온라인 분쟁조정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관계에서도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사고 및 분실 도난 시 전자금융거래법이 배상책임 측면에서 차이가 큰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유사 지급결제 기능을 하는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서로 다른 배상책임이 적용되어 이용자의 혼란과 피해, 규제 불균형의 문제가 적지 않게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불, 전자화폐 분실 도난 시 충전금을 보상해 주지 않는

거래법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과제

전자금융거래 요건 및 범위 확대

-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요건 및 범위 확대
⇒ 비대면 요건 삭제, 자동화 요건도 이용자의 거래지시 과정에 일부 또는 전부에 전자적 장치가 개입 시 전자금융거래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혁신기술 관련 법률관계 반영

- 금융SI 알고리즘 통제와 행위규제 신설
- 예금토큰, 토큰증권 거래 등에 있어 권리추정력이나 양도의 제3자 대항력, 기록관리기관 관련 근거 마련
- 블록체인 관련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거래 취소, 배상책임과 안전성 확보대책 의무 주체 명시
- 메타버스 플랫폼과 아바타의 법적 성격 규명, 아바타와 본인인증 및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채택

전자지급수단의 설계와 역할 재검토

- 타 법률 규율 전자지급수단의 전자금융거래법 일원화(이관)
- 법률별 다른 사고 배상책임 구조 통일
- 전자화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통합
- 소액후불결제업무(BNPL)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
⇒ 신용공여 보다는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 성격 등 혁신성에 무게
- 스테이블코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
⇒ 라이선스 및 진입규제, 금융보안 규제 적용

사고 배상책임 및 분쟁조정제도 정비

- 전자금융 사고요건, 입증책임 주체, 면책사유, 이용자 협력의무, 책임이행조치(보험 등) 전반에 걸쳐 전면 재검토
- 금융감독원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의 배상책임 구조와 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
- 온라인 분쟁조정(Online Dispute Resolution : ODR)의 도입 검토
-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이한 배상책임구조 일치
- 선불, 전자화폐 분실 도난 시 충전금을 보상해주지 않는 환급 면제 조항 삭제

환급 면제 조항(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은 소비자단체와 소송을 불러오고 있는데 최근 기술 및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사업법 측면

가. 전자금융업종 개편 및 진입규제 정비

전자금융업 개편 방향은 EU,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기존 법령에 한정적·열거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사업요건 및 기준 등을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 혁신적 핀테크 사업자들의 진입이 자유롭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서비스 등 현상 위주의 포지티브식·열거주의식 업종설계보다는 원칙 중심, 기능별 업종 체계로 재편해 규제 사각지대(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제조업체)를 없애야 할 시점이다. 유사기능(PG,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납부업)의 통합 단순화도 필요하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 경쟁 촉진을 위해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나 허가·등록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Sliding Scale)하거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스몰라이선스)의 도입도 시급하다. 진입규제(자본금, 법인 형태, 인적·물적 설비 요건)도 해외 사례 등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초기 자본금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활발한 진입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과도하고 불공정한 규제는 시대에 맞게 정비가 시급하다. 현행법상 핀테크 등 혁신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요건, 라이선스도 명확하지 않다. 일본 은행법과 유사하게 네거티브 방식의 정의와 요건을 정립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지급결제서비스법이 별도 존재하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의 법적 성격, 인프라(청산기관) 및 참여기관의 역할과 법률관계, 책임구조 등을 반영한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효율적인 전자금융업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픈파이낸스 시대 종합플랫폼이자 금융산업의 필수 인프라 설비로서 금융결제망의 개방 원칙과 기준, Gate Keeper로서의 역할 등도 법 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할 시점이다.

2023. 9 개정 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과 상품권업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규제와도 규제 대상이 중복되고 있다. 특히 제3자형으로 발행하는 영세사업자는 대부분 선불업 규제 대상임에도 자가형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은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본다. 이용자 자금보호 측면에선 자가형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동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법제화한 금융 당국은 소수의 엄선된 선불업자에 한해 경영을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독과점 형성이나 경쟁 저해 소지가 없는지 다각도의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도 가상자산은 전자금융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에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혁신적 핀테크산업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가상자산 시장,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가 커지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 전자금융업의 경영·부수업무 재설계

빅데이터·금융AI·오픈파이낸스시대에 걸맞도록 전자금융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경영업무(타법에서 인허가 대상인 업무)와 부수업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재설계 방안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담어나갈 필요가 있다.

다.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 검토

공정 경쟁 및 개방 이슈 차원에서 비금융회사인 전자금융업자(빅테크 포함)와 경영 전자금융업자(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게 계좌(Payment Account)기반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은행업무 중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se)로서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란 자금이체업자, 경영전자금융업자(증권·카드·보험사 등) 중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자로서 이용자에게 계좌(지급결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자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현재는 전자금융업자나 비은행 금융회사가 은행과 제휴(펌뱅킹계약)해 계좌를 빌리는 형태로 금융결제망에 간접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직접 개설하는 “독립 계좌(지급결제 전용 계좌 : PA)”를 이용해 지급결제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좌기반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을 수행할 경우 비금융사업자들(전자상거래, 통신, 유통기업 등)과의 제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마이데이터나 마이페이먼트, 소액후불결제 기능 등과 결합해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주요국에서는 이미 종합지급결제업 같은 서비스 유형이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 금융 당국도 싱가포르의 주요지급결제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 재입법을 추진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유럽(EU 등)에서는 기존 전자화폐(EMI)사업자가 주로 이 기능을 수행한다. EU PSD3나 영국에서는 이미 금융결제망에 대한 비금융사업자의 참여를 시행하고 있다. 애플 등 다국적 빅테크는 애플통장 등 종합결제 기능을 영업모델로 해서 이미 상용화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국내 진출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라.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시급

국가 차원의 공동플랫폼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오픈뱅킹은 핀테크 결제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결제망 개방 및 마이데이터 등 금융데이터 정책과 맞물려 오픈파이낸스 개념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오픈파이낸스란 오픈뱅킹으로 대표되는 뱅킹기능의 개방을 넘어 지급결제 활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마이페이먼트), 각종 고객 금융데이터와 금융상품 정보를 개방(마이데이터)함으로써, 이들 연계 기능들을 결합해 고객 금융서비스(뱅킹, 신용, 자산관리)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통칭한다. 종합자산관리 측면에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기능이 결합하는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현재 금융결제원 중심의 은행권 자율 규약에 따라 이용 및 제공기관과 이용료 등을 결정하고 있어 규범으로서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도입을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논의가 보류 또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 마이데이터의 필수 연계기능으로서 마이페이먼트와 오픈뱅킹의 이용을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금이체 지시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처리 협조 의무, 차별금지 의무(처리순서, 소요시간, 수수료) 등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재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마. 전자금융업 건전성 규제 정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이 사실상 ‘권고적 효력’에 머물고 있다. 동 기준을 위반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수단(건전성기준 준수 명령제,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정 공포(2023.9.14.)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선불충전금의 운용 제한(외부 예치, 신탁, 안전자산 보관 등)으로 인한 기업 자금 운용의 압박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자금의 운용은 사실상 차단되고 수수료만으로 경영을 유지해야 되는데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할인발행이나 무상 적립 제한 등의 조치까지 받게 되어 비즈니스 모델에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은 크다고 본다. 그러나 자금운용 대상을 100% 안전자산으로 제약하는 부분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자칫 선불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선불충전금에 대해서까지 안전자산으로만 운용을 제약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바.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행위규제 정비

최근 일부 핀테크업체들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전자지급수단과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하여 현행 법률을 우회하는 여수신(신용공여)행위를 사업모델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서비스의 일방적 축소나 차별행위, 계약의 중요내용의 미설명, 소비자오인행위, 시알고리즘의 투명한 운영과 통제 소홀, 이용자 예약금으로 신용공여 등의 탈법 영업행위 등이 시장에 일상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행위규제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 금융업법 등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전자금융업종별로 중요하고 시급한 행위규제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정 수준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 시장에서는 1차 PG(하위), 2차 PG(상위), 3차 PG(최상위)로 이어지는 재위탁관계가 많은데 사고가 나거나 분쟁 발생 시 1·2·3차 이른바 n차 PG들 간 외관상 법적 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하다. 또한 계좌정보 불법 제공 등 온갖 불법적 영업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적절히 통제할 행위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PG 관련 표준약관으로 규제하고 있는 PG의 구둑경제 관련 행위규제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불업의 경우 화이트라벨서비스 등이 보편화되면 소비자 오인행위 소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이용자 편의 증진, 결제수단의 다양화 필요성, 자금세탁 방지 의무 신설 등을 감안하여 권면 충전 한도는 상향하되 현재 입법 미비로 규제가 없는 1일, 1회 이용한도 설정은 시급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용한도 미설정으로 피싱범 등이 무한 반복 충전 후 인출해 가는 등 사고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자금융업종 개편 및 진입규제 정비

-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서비스 등 현상 위주의 포지티브식 열거주의식 업종 설계 보다는 원칙 중심, 기능별 업종 체계로 재편
⇒ 규제 사각지대(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에서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업체) 해소
- 전자금융업 사업요건 및 기준 등을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
⇒ 혁신적 핀테크 사업자들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요건 명시
- 경영전자금융업자(증권·카드·보험사 등) 도입
- 유사기능(PG,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납부업)의 통합 단순화
- 진입규제(자본금, 법인 형태, 인적·물적 설비 요건)의 합리적 개선
⇒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나 허가 등록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Sliding Scale)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스몰라이선스)의 도입
- 지급결제서비스의 법적 성격, 인프라(청산기관) 및 참여기관의 역할과 법률관계, 책임구조 등을 반영
- 제3자형 영세 선불업자와 자가형 대형사업자(등록면제)의 규제 형평성 이슈 검토
⇒ 이용자 자금보호측면에선 자가형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승인 시 소수 사업자만 선정할 경우 독과점 형성, 경쟁 저해 해소방안 검토
- 가상자산 중 스테이블코인의 전자금융업 편입

전자금융업의 경영·부수업무 재설계

- 빅데이터·금융시시대, 오픈파이낸스시대에 걸맞도록 경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 검토

- 은행업무 중 지급결제업무를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se)화 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검토
- 전자지금이체업자, 경영전자금융업자(증권·카드·보험사 등) 중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
- 직접 개설할 수 있는 “독립 계좌(PA :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허용
- 금융결제망 가입 허용(사례 : EU PSD3, 영국)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시급

-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의 연계기능으로서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 지급지시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처리협조 의무, 차별금지 의무 명시
- 마이페이먼트의 행위규제 등을 반영

전자금융업 건전성 규제 정비

- 사실상 '권고적 효력'에 머물고 있는 현행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의 실효성 강화
⇒ 위반시 이행강제수단(건전성기준 준수 명령제,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도입
-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 합리적인 기업 운영과 비즈니스모델의 보장 측면에서 과도한 안전자산 운영 규제 지양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행위규제 정비

- 서비스의 일방적 축소나 차별행위, 계약의 중요내용 미설명, 소비자 오인행위 유발, 시알고리즘의 투명한 운영과 통제 소홀, 이용자 예약금으로 신용공여 등 영업행위에 대한 행위규제 신설
- PG에 대한 행위규제 신설
⇒ 1,2,3차 PG들 간 외관상 법적 책임의 주체 명확히 규정
⇒ 계좌정보 불법 제공 등 온갖 불법적 영업행위들 규제
⇒ 구독경제 관련 행위규제도 반영
- 선불업 행위 규제 정비
⇒ 화이트라벨서비스 등에 있어 소비자 오인행위 방지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일, 1회 이용한도 설정
- 금융플랫폼 정의 및 행위 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일원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전자금융보조업자는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무등록·무신고로 운영되다 보니 누가 전자금융보조업자인지 불명확해 일일이 유권해석 등 질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가 수많은 전자금융보조업자를 매일매일 점검 관리해야 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보안 규제 측면

가.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

자가 소유 형태의 중앙집중식 단일 전산시스템을 전제로 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의 보안 규제 내용은 전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픈 API,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생체인식, 분산원장, NFT, 토큰증권, 인공지능(AI), 금융플랫폼, 메타버스(아바타),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이 새롭게 제기하는 보안 이슈 등을 비추어 볼 때 위험의 사전 통제, 맞춤형 보안 규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전산시설,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과도할 정도로 촘촘한 보안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해(2022년) 연말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보안의 주요 원칙과 목표를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하고 세부 사항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의 추진을 서두르는 큰 이유는 최근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급변하는 금융 IT 환경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융보안의 원칙과 규제 세부내용, 규제 방식 등이 낡았기 때문이다. 현행 보안 관련 규정들은 과도하고 세세한 보안규제에다가 사전통제 성격이 강하고 획일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영세한 전자금융업자 등이 준수하기 어렵다. 또 금융보안을 CISO 위주의 실무적 업무로만 여겨 전사적인 보안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평가이다. 금융보안 규제 정비를 목표·원칙 중심에서 사후책임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가 자율보안체계를

미구축하거나 보안 사고 발생 시에는 사후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현행 보안규정은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등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나. 포괄 위임 문제 해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안전성 확보의무 및 이와 유사한 규정 형식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에 대해서는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에 대한 하위 규정 위임방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개의 조문을 근거로 감독규정에 수십개 조문이 파생되고 있다. 이는 감독규정 상 여러 조문을 위반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또는 신용정보법 제19조 위반 1건으로 합산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제재수준의 왜곡 현상도 불러오고 있다. 해당 법률의 포괄 위임 형태를 지양하고,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고시(감독규정)의 세부 규정사항에 대한 법률 상 위임 근거조항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데이터 관련 법률간 체계 정합성 확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들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중첩 적용되고 있다. 특히 암호화, 접근통제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이 중복적으로 유사 내용을 담고 있어 실무에서는 부담과 혼란이 상당하다. 기록의 생성·보존·파기의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지정, 데이터의 국외 등에서도 세법이 유사 규제를 하고 있어 법 체계 정합성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정보처리 위수탁에 해당하고 특히 금융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 규제, 정보처리 위수탁에 관한 규제,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클라우드컴퓨팅이용절차 규제까지 삼중 중복 규제 적용으로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 금융보안의 원칙과 목표만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
-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보안규정은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등으로 하향
- 포지티브 규제체계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보안 자율성을 부여
- 자율보안체계 미구축하거나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책임을 강화(과징금 부과)
- IT리스크 상시 감시 환류체계, 금융보안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확대
- 전사적 보안체계 확립, 중요 보안사항의 이사회, CEO 보고 의무화
- 금융보안 자율평가체계 구축 및 5:5:7률의 부활(중소형 업체)
- 인증(접근매체) 규제 등의 강화(지사용, 조화용 구분, 고위험 거래 시 투택터 인증 의무화)
- FDS정보 등의 공유 및 법적 근거 신설
- 대형 전자금융업자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이용자 수·매출 규모별로 차등화)
- 금융 분야 사이버 안보 및 재난대응 관리체계 구축
- 전자금융 사고보고 체계 정비(사고보고 사항 법률에 반영)

포괄 위임 문제 해소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형태 개정(포괄 위임 지양)
⇒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고시(감독규정)의 세부 사항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조항의 구체적 명시

데이터 관련 법률간 체계 정합성 확보

- 암호화, 접근통제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중복 유사 규제 정비
- 기록의 생성·보존·파기의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지정, 데이터의 국외 이전 등에 있어 중복 유사 규제 정비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경우 이중 삼중 중복 규제 해소
⇒ 정보처리 위수탁 규제와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클라우드컴퓨팅이용절차 규제 중복 적용 문제 해소

입법 방식 측면

가. 정상적 절차로 조기 입법 추진

디지털금융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거래되고 이용자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샌드박스를 통한 예외적 특례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정비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등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의 입법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기 계류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 입법 타이밍(속도)과 방법에 대한 시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디지털금융에 대한 법 제도화 미비는 규제 사각지대 발생과 규제차익 등 업권 간 갈등을 불러오고 소비자 후생 저하,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해결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금융규제의 공백과 지연이 신산업 발전이나 금융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른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지연은 “청부입법” (정부가 만들어 주고 의원이 발의하는)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청부입법은 정부 입법 절차의 장시간 소요와 부처 간 협의 도출의 어려움을 생략하고 신속히 국회 심의로 갈 수 있는 장점은 있다. 당정 협의, 입법예고,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험난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부입법은 그러나 입법안이 완성될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돌연 국회에서 발의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청부입법” 형태로 우회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정당한 입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제반 입법 절차 등을 통해 이해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담아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회의 법률 심의 부담을 줄이고 이해 당사자 간 규제 수용성도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법제처의 자구체계 심의절차도 의무적으로 밝아 법률들 간 체계 정합성을 더욱 높일 필요도 있다.

나. 자율규제기관의 전문성 및 갈등 조정 기능 필요

디지털금융에 대한 법제화 과정에서 소수의 전문가나 정부 당국의 일방적 입법이 이뤄질 경우 갈등 조정 실패나 시장의 새로운 입법 수요가 제대로 반영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첨예한 이해 갈등과 대립은 정부와 국회의 소극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입법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자율규제기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금융의 주요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적기 신속 입법(패스트



트랙)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협회 등 자율규제기구의 전문적 조사연구 기능이나 업권 간 갈등 조정 기능, 입법 지원 및 유권해석 지원 기능을 강화해서 정부 부처와 국회의 디지털금융에 대한 법 규제의 공백이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기술중립성 유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수단 및 접근매체, 전자금융업종 설계, 배상책임 등에 있어 세세하고 촘촘한 세분화 방식의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 열거주의 규제방식은 당시 시대상황만 보고 입법화를 하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정확성이 떨어지며, 심지어 규제 사각지대마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처가 어려워 수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 입각한 미래 전자지급수단과 업종의 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도 되고 있다.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과 접근매체 종류 등에서 특정 방식만 허용하고 있는 엄격한 법 적용도 디지털금융 법 규제가 지켜야 할 기술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이용자에게 특정 전자지급수단, 특정 접근매체(전자서명수단)의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의 신설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픈 API시대에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전용회선 설치 의무화와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중요 정보의 저장을 금지하는 규제도 금융클라우드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에 해당한다.

맺는 말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안(윤관석, 김병욱 의원 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내년 2024년 총선 이후 재입법 추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선 개정하겠다고 수 차례 밝히거나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시장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사안들, 특히 이해당사자 간 쟁점 갈등이 없었던 사항들을 내년 총선 이후 일부 개정안 형태로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심의 지연 또는 보류의 원인이 된 전면 개정 형태는 지양하고 중요도 순위에 따라 원 포인트 부분 개정을 자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오픈뱅킹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인증(접근매체) 규제 등의 강화와 금융보안 원칙과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 등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세부 내용을 법, 시행령, 감독규정,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입법 추진이 가장 먼저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요국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과 지급결제 전용 계좌의 허용,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마이페이먼트의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화도 재입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낮은 금융결제 인프라를 계속 유지할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결제 혁신 흐름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고 지급결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관산업의 혁신 성장도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스테이블코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차원에서 규제 설정, PG의 영업행위 규제 및 건전성 강화, 가맹점 기준 및 관리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충전한도를 상향(기명식)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도 시행령 개정 시 상향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간편결제의 소비자 편의성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혁신을 추구하는 디지털금융 분야는 더욱 법 제도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디지털금융 관련 법이나 금융 당국의 규제 방향 하나하나가 비즈니스모델이나 사업을 가로막거나 성패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측면, 혁신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디지털금융에 대한 법 규제의 지원은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게 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귀중한 발판이 된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의 근본적 개편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동 법이 명실 상부하게 디지털금융의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바로 잡아나가기를 바란다.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금융결제원에 28년 근무하면서
신사업개발실장, 금융데이터융합센터장을
역임. 현재는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금융팀
에서 전문위원으로서 Advisor 역할을 수행
중이며,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박사학위 취득